

## 공동주택 관계법령 상 신고, 보고, 통보, 허가 업무

순서	관리행위 대상	제출 및 신고기한	제출 및 신고 기관 대상	관계 법령	업무 참고사항
1	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신고	30일 내	시장 군수 구청장 제출	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5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[별지 제33호서식 이용]	신고의무 :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- 과태료 5백만원
2	주택관리사 직인 및 배치, 변경신고	배치된 날로부터 15일 내	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시도회	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(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) ③항 시행령 70조(손해배상책임의 보장)	주관사(보)자격 명시, 배치신고 시 사용된 직인 날인 신고·전임자 퇴직신고 안내 - 위반시 : 과태료 5백만원
3	주택관리사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	배치된 날 제출	입주자대표회장 등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(관리방법의 결정등의 신고)	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발급 증서 권고 (신원보증서는 법적 제출대상이 아님) - 위반시 과태료 5백만원
4	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	행위 전	시장 군수 구청장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(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) 및 시행령[별표 3] 참조	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
5	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또는 변경 신고	30일 내	시장 군수 구청장	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(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)	신고의무 :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미신고 과태료 5백만원
6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배치 신고	안전 관리자 배치 15일 이내	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용	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(안전교육) 제2항	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시스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접속해서 신고 / 교육이수여부 확인
7	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	10일 이내	국민안전처장관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 2	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
8	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통보 (관리주체 변경포함)	변경된 후 3개월 이내(법제29조)	행정안전부장관	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(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)	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 서식 한국승강기 안전공단
9	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및 중대한 고장 통보	지체없이	한국 승강기안전 관리공단이사장	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48조(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) 시행규칙 제69조(사고보고 및 조사)	현장 보존의무 있음[별지 제37호 서식]이용 승강기업체 증거인멸 유의 / 과태료 5백만원
10	소방안전관리자, 보조자 선임신고	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신고	소방본부장 소방서장	화재예방·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동 시행규칙 제14조 및 14조의 2	시행규칙 별지19호 및 19호의 4 서식
11	전기 안전 관리자 선임신고	30일 이내	한국전기 기술인협회	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[별표 8] 참조	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[별지 제15호 서식]이용 벌금 5백만원
12	자가용 전기설비 중대사고	24시간 이내	통상자원부장관	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(중대사고의 통보 조사)	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3조 [별표 16] 참조
13	중대 재해 발생보고	지체없이	지방노동관서의 장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67조	전화 팩스 등 이용
14	산업재해 발생보고	재해발생 1개월 이내	지방고용노동청장등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	별지 제30호 서식
15	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	사용 후 30이내	시장 군수 구청장	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(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) ② 동법시행규칙 제18조	과태료 5백만원